

【 5 】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6. 10. 1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□ 제안이유

현 장흥국민관광지의 현안문제인 쓰레기처리, 하천오염방지대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경영수익사업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, 군민에게 수준높은 공연예술과 다양한 예술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군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공간, 예식장, 경영사업의 장 등으로 활용할 문화예술회관이 전체 공정 92%에 달하고 있어 장흥국민관광지와 문화예술회관을 통합 관리하는 문화관광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가. 문화관광사업소는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 일원에 둠 (안 제2조)

나. 문화관광사업소의 업무 (안 제3조)

- 정부시책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영화, 연극, 음악 및 무용의 공연
-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의 행사장소 제공
-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
- 국민관광지 시설물 관리 및 시설운영
- 문화예술회관 및 국민관광지 시설물 등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등

다. 문화관광사업소에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 (안 제4조)

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공익상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군민의 문화예술 향상을 도모하고, 생활체육공간과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및 문화·관광 경영사업을 위하여 양주군 문화관광사업소(이하“문화관광사업소”라한다)를 둔다.

제2조(위치) 문화관광사업소는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132번지 일원에 둔다.

제3조(업무) 문화관광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정부시책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영화, 연극, 음악 및 무용의 공연
2.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, 예술의 행사장소 제공
3.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
4.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
5. 기념행사 및 일반 문화행사
6. 국민관광지 시설물관리 및 시설운영
7. 국민관광지내 불법행위 및 행락질서 지도 단속
8. 문화예술회관, 국민관광지 시설물 등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운영
9. 국민관광지 및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사용허가
10. 입장권의 발매 및 입장료, 사용료, 기타 수입금의 수납 관리
11. 기타 문화예술회관 및 국민관광지 설치목적에 따른 제업무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소장) ①문화관광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문화관광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